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38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심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01	손명수의원· 권영진의원 등 11인	'25.12.15.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7)
				소위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3.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81	김위상 의원 등 12인	'26. 3.17.	상정	※ 소위원회 직접 회부 ('26. 3.27)
				소위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3.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행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요금의 결제 자료(이 경우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요금의 결제 자료(이 경우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③ ·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